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공식문서 외 ○○기록물의 등록·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서구, 사상구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등록·분류·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·공개여부,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·일정표·방문객명단 및 대화록은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(○○과)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관련 메모·일정표·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’ 등 기관장 관련 ○○ 기록물에 대한 등록 및 수집 등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‘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관련 메모·일정표·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’ 등 기관장 관련 ○○ 기록물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, 사상구청장은

[시정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메모·일정표·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등 ○○기록물을 조속히 등록·관리하시기 바랍니다.